

의안번호	2203459
의 퇴 인	김선민의원
회 답 일	2024.10.18.
추계번호	24D3155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망정보를 제출하고, 심사평가원이 시·읍·면의 장에게 통보하며, 시·읍·면의 장이 사망신고의 확인·최고 및 직권 사망 기록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98억 8,500만원(연평균 19억 7,70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전산정보시스템 구축(안 제89조의2 및 제89조의3 신설)	7,604	-	760	760	760	9,885	1,97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주: HW 유지보수비 및 상용 SW 유지보수비는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, 장비를 구입한 해(2026년)의 2년제인 202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9조의2 (사망사실의 통 보) 신설	- 의료기관의 장은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(제2항) -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사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·읍·면의 장에게 해당 사망정보를 포함한 사망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
2	안 제89조의3 (사망신고의 확인·최고 및 직권 사망 기록) 신설	- 통보를 받은 시·읍·면의 장은 신고기간 내에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(제1항) - 시·읍·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통보받은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함 (제2항) - 시·읍·면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사망을 기록하여야 함 (제3항)	의무규정
---	---	---	-----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9조의2(사망 사실의 통보) 신설	○	-
2	안 제89조의3(사망 신고의 확인·최고 및 직권 사망 기록) 신설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전산정보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추계에서는 대법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‘심사평가원’이라 함)에서 제출한 시스템 개발 소요비용 산출내역을 참조하여 산출함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과 법안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의료기관의 사망정보 제출(안 제89조의2제2항)

□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의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망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전산정보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

- (시스템 개발 비용) 의료기관이 사망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이 전산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69억 4,260만원으로 예상¹⁾
- (유지보수 비용) 유지보수 비용은 시스템 구축 후 2년째(2028년)부터 구축비용의 10%²⁾가 소요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함

[표 2] 의료기관 사망정보 제출 전산정보시스템 개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시스템 개발	6,943	—	—	—	—	6,943
유지보수비	—	—	694	694	694	2,083
합 계 (a)	6,943	—	694	694	694	9,025

주: HW 유지보수비 및 상용 SW 유지보수비는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, 장비를 구입한 해(2026년)의 2년째인 202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자료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나. 사망사실의 통보 연계시스템 재개발(안 제89조의2제3항)

□ 개정안에 따라 사망정보를 제출받은 심사평가원이 시·읍·면의 장에게 해당 사망정보를 포함한 사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경우, 심사평가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재개발이 필요함

- (시스템 재개발 비용) 사망통보 연계 기능, 사망통보정보 조회 기능 등을 비롯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재개발함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재정소요는 2억 8,291만원으로 예상

1)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사망정보를 제출하게 될 의료기관을 병원급 이상 기관 4,200개소(2023년 기준)로 예상하여 최대치를 추정한 것으로, 사망 미발생기관 고려시 비용 감소 예정
2)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유지관리 요율 10~15%(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, 『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』, 2024년, p178)

- (유지보수 비용) 유지보수 비용은 시스템 구축 후 2년째(2028년)부터 구축비용의 10%가 소요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함

[표 3] 사망사실 통보 시스템 재개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시스템 재개발	283	-	-	-	-	283
유지보수비	-	-	28	28	28	85
합 계 (b)	283	-	28	28	28	368

주: HW 유지보수비 및 상용 SW 유지보수비는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, 장비를 구입한 해(2026년)의 2년째인 202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자료: 대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다. 사망신고의 확인·최고 및 직권 사망 기록(안 제89조의3)

- 개정안에 따라 시·읍·면의 장이 사망신고의 확인·최고 및 직권으로 사망을 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

- (시스템 재개발 비용) 사망사건 최고 기능, 사망사건 직권기록 기능 등을 비롯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재개발을 함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재정소요는 3억 7,831만원으로 예상
- (유지보수) 유지보수 비용은 시스템 구축 후 2년째(2028년)부터 구축비용의 10%가 소요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함

[표 4] 시·읍·면장의 사망신고 확인·최고 및 직권 사망 등록 시스템 재개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시스템 재개발	378	-	-	-	-	378
유지보수비	-	-	38	38	38	113
합 계 (c)	378	-	38	38	38	492

주: HW 유지보수비 및 상용 SW 유지보수비는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, 장비를 구입한 해(2026년)의 2년째인 202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자료: 대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라. 추계 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심사평가원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망정보를 제출하고 이를 심사평가원이 시·읍·면의 장에게 통보하며, 시·읍·면의 장이 사망신고의 확인·최고 및 직권으로 사망을 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98억 8,500만원(연평균 19억 7,70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의료기관 사망정보 제출 전산정보시스템 개발 (a)	6,943	—	694	694	694	9,025	1,805
사망사실 통보 연계시스템 재개발 (b)	283	—	28	28	28	368	74
시·읍·면장의 사망신고 확인·최고 및 직권 사망 등록 시스템 재개발 (c)	378	—	38	38	38	492	98
합 계 (a+b+c)	7,604	—	760	760	760	9,885	1,97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